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5,539,005	10,666,170
일반회계	318,671,968	9,560,159
특별회계	36,867,037	1,106,011
기타특별회계	36,867,037	1,106,0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3,576	39,7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602,457	498,074
수질개선특별회계	8,206,886	246,207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16,000	9,48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98,032	266,941
의료보호특별회계	136,863	4,106
주차장특별회계	67,214	2,01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55,119	37,654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60,890	1,8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11,54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